

새 정부 노동정책과 노조가 나아갈 길

- △ 사 회: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 발 표: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 토 론: 노중기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

- 일 시: 2017년 6월 20일(화) 오후 3시 ~ 5시
- 장 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교육장
- 주 최: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
- 후 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의 대응전략

이병훈(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 노동 국정기조

❖ 추진배경 (5.9 일자리위원회 보고서): **적절한 문제 진단**

- ✓ 저성장경제의 뉴노멀 시대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노동시장 양극화에 따른 일자리 위기 심각 ⇨ 일자리 질 저하와 미스매칭 심화
 - 실업률: 전체 2012년 3.2% → 2016년 3.7%; 청년(15~29세) 7.5% → 9.8%
 - 고용률: 전체 2012년 59.4% → 2016년 60.4%; 청년 40.4% → 42.3%
 - 취업자 증가분(전년대비): 2012년 43.7만명 → 2016년 29.9만명
 - 맥킨지(2016): 414개 직종 2,500만명 일자리 분석 결과, 2030년까지 최대 49.7% 지능정보기술에 의해 자동화-대체 가능
 - 임금 격차(2015년): 대기업 정규직 100 > 대기업 비정규직 65 > 중소기업 정규직 50 > 중소기업 비정규직 35; 원청 100 > 1차 하청 52 > 2차 하청 49 > 3차 하청 42

❖ 대선 공약 (4)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일자리창출-가계소득 증대-소비확대-내수활성화-성장동력 회복’ 을 도모하려는 “더불어(일자리주도)성장” 의 패러다임 천명
- ✓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늘-줄-높**(일자리 늘리고, 노동시간/비정규직 줄이며, 고용 질 높이는)” 정책 추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노동 정책공약 (I)

❖ 일자리 창출

-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및 일자리 현황판 설치 및 고용영향평가제 실시
-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무원 17.4만개, 보육·요양·공공의료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 비정규직 30만명 직접고용 전환
- ✓ 실노동시간 단축 등의 일자리나누기로 민간부문 50만개 창출: 주 52 노동시간 및 특례/제외업종 축소, 연차휴가-휴일 사용촉진, 광주형 일자리모델 확산, 중소기업 노동시간단축 지원
-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대책:
 - 청년일자리: 청년고용 의무할당율 확대(공공 3%→5%; 민간 3~5%)와 민간대기업 확산(준수 인센티브 & 미준수 고용분담금/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중소기업 청년채용 지원,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채용관행 개선, 청년창업 지원/육성 확대
 - 중-노년일자리: 정년보장, 사직숙려제도, 용역일자리 고용승계,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적용, 두루누리 사업 확대(건강보험 추가), 임금보전보험 도입, 실직급여 현실화, 인생이모작 설계, 자영업 대상 사회보험료 및 창업 지원 확대, 65세 고령자 실업급여 적용, 노인일자리 확대와 수당 인상
- ✓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남녀고용평등법의 확대 적용, 적극적 고용제도 개선, 경단녀의 일자리 연계 강화, 임신-출산 관련 직장 내 성차별 시정/감독 강화, 직장 성희롱 피해 보호 및 처벌 강화
- ✓ 고용안전망 확대: 실업급여 보장 강화, 공적 퇴직연금 도입, 은퇴자 건강보험 지원

3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노동 정책공약 (II)

❖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 ✓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 감축로드맵 마련,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정규직 전환 지원 확대와 비정규직 상한 및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제 도입
- ✓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비정규직 차별해소 실행위원회 구성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세부 적용, 1년 미만 비정규직 퇴직급여 보장
- ✓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기업의 공동사용자 책임 부과: 간접고용관련 법제화, 용역의 고용/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대기업 불법파견 근절 및 직접고용/고용의제 제도화
- ✓ 최저임금 1만원 및 생활임금 확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포함,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자영자-상공인 지원, 지자체 생활임금-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적용-공공발주 적정임금 시행 지원

4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노동 정책공약 (III)

❖ 노동존중 사회 실현

- ✓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과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 ✓ 임기 내 1800시간대 노동시간 단축 실현: 노동시간공시제, 국가 노동시간단축 계획 수립, 주 52시간 상한제 전면 시행, 연장근로 특례/예외 업종 축소, 장시간 사업장 규제 강화, 칼퇴근법 도입 및 포괄임금제 규제,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근절
- ✓ 체불임금 제로시대: 재직자 체당금 확대 적용, 체불임금 근절 제도개선, 일자리 최소 기준 노동행정/근로감독 강화
- ✓ 알바존중법 도입 및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장: 전담 근로감독관 설치, 알바체당금제,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알바청년 실업급여/퇴직금 적용
- ✓ ILO 핵심협약 비준: 결사 자유 및 단결권 보호(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제29호), 강제노동 철폐(제105호)비준 및 관련 국내법 개정
- ✓ 노조 가입율과 단협 적용 확대: 특고-실직/구직자 노동기본권 보장, 근로시간면제 및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개선, 산별교섭 촉진, 단체협약 효력확대 제도 정비, 성과연봉제 등의 행정지침/지도 중단,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
- ✓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보장: 노동회의소 설립, 중입원대표제도 실질화, 경찰-소방관 직장협의회 설립 보장
-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및 민간 확산
- ✓ 부당해고 근로자의 복직질차 간편화
- ✓ 위협의 외주화 방지와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
- ✓ 택시운전자 생존권 보장

5

일자리위원회 100일 플랜 & 100일 계획

일자리위원회 100일 플랜(5/9)	일자리위원회 100일 계획(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출범 ❖ 일자리중심 행정체계 확립 ❖ 공공부문 일자리 중원계획 수립 ❖ 최저임금 1만원 조기달성 ❖ 근로시간단축 특별조치 ❖ 중소기업 구인난-청년 구직난 동시 해소 ❖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산업 육성 ❖ 패자부활 오목이 프로젝트 ❖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지원 ❖ 차별 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 일하는 어르신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 구축 ❖ 좋은 일자리 만드는 사회적 경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중심 행정/정책체계 구축 ✓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공무원 1.2만명 추가채용, 공공부문 일자리중원 로드맵 수립, 경영평가편람 일자리 관련 지표 반영 ▪ 민간부문: 고용영향평가제 강화,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확대, 혁신창업생태계 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금융/세제지원 확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고용지원 확대 ▪ 지역특화일자리 및 사회적경제: 노사상생형 일자리모델 확산, 지역산업클러스터 활성화 및 산업/지역단위 일자리 실천전략 마련,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 마련 ✓ 일자리 질 높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민간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 최저임금 1만원 2020년 달성 및 법정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6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노동 정책 총평

- ✓ 일자리 위기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국가적 난제를 해결-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노동개혁 방향의 정책 해법 제시
 - 일자리문제의 해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으려는 문재인정부의 분명한 의지와 적극적 정책 해법을 밝힘과 동시에 비정규직 등의 노동약자 보호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과제들을 망라하여 제시하고 있음.
 -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일자리위원회 설치에 대한 1호 업무지시(5/10)와 인천공항공사 방문을 통한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의 천명(5/12) 그리고 일자리추경 11.2조(11만개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노동 정책공약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음.
- ✓ “노동존중 사회 실현” 의 정책공약 이행에 따른 “편평한 노사정 관계” 와 노동약자 보호 강화 기대 (박원순표 노동존중 서울특별시 정책 참조 요)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촛불운동과 노동계와의 정책협약 등으로 노동개혁정책(예: 불법적 행정지침 및 성과연봉제 등) 적폐 청산 약속
 - 비정규직 처우개선,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확대, 고용안전망 개선, 근로감독행정 및 차별시정 강화 등 노동계의 숙원과제 공약화

7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상황 점검

- ✓ 일자리정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 추진의지와 높은 대통령 국정지지율 (80% 대), 하지만 인수위 없는 집권 초기의 국정 상황 (정책 추진력의 제약 조건)
- ✓ 청년 취업난과 비정규직 등의 노동문제 해결에 대한 높은 국민적 기대/관심과 적폐 노동정책 폐기에 대한 노동계의 강한 요구 (☞ 보수언론의 '빛 독촉' 론)
- ✓ 노동계의 전향적 화답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의 5.18 정책제안, 민주노총의 일자리위원회 및 최저임금위원회 참가)
- ✓ 일자리/노동문제의 구조적-복합적 특성 (노동시장-노사관계-경제/산업구조-사회문화/구범-기업관행과 노조운동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고질적 문제들)
- ✓ 일자리/노동문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시각 (노동계의 보호/안정성 강화 vs. 경영계의 유연성 및 정규직 과보호론)
- ✓ 여소야대의 의회권력 지형 (협치 딜레마- 인사청문과 추경예산 처리)과 야당들의 견제/흠집내기 (야당의 존재감 과시와 2018년 지자체 선거 의식) 및 국회선진화법의 절차적 요건 등과 같은 정치적 제약여건 산적 (노동개혁의 입법/예산 추진 난관)
- ✓ 정부 내 일자리/노동정책의 관료중심 추진체계와 노동전문성 미비 (일자리위원회, 청와대, 국가기획자문위원회 등) 과 투입위주의 단기성과주의 정책대안? (예: 추경예산 안)

-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공약어음을 어떻게 현금화할 것인가? ☞ 노동계의 역할과 과제
- 노동정책 추진의 6월 고비 (2018 최저임금 결정, 일자리추경심의, 성과연봉제 폐기 등)

노동조합운동의 문제 성찰

- 10.2%의 조직 대표성 (2015년 기준) (대표성 위기)
 - 비정규직/영세기업 노동자-청년-여성 등 조직 참여 및 권익 보호 미비
 - '무늬만 산별' & 총연맹 지도집행력 취약 (관료화-분파문제-조직갈등 등으로 지도집행력 약화)
- 조합원 실리/기득권 지키기의 운동관행 (정당성/연대성 위기)
 - 대기업 정규직 vs.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간 노동양극화 심화
 - 유노조 사업체, 청년고용 낮은 비중 (한국은행 2017년 연구보고)
- 전략적 집행능력 미흡 (전략부재/지도집행력 위기)
 - 조직자원 동원, 연대/연결망 활용, 대중담론 형성, 활동레퍼토리 등에 있어 취약한 전략적 역량 노정
 - 정책대안 & 정책협상 능력 미흡
- 국민적 신임 추락과 반노조 정서 확산 (공공성 위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조운동의 대응전략

- ❖ 운동목표: ‘문재인표 노동정책어음을 현금화 하기’ + ‘지속가능한 노동존중사회 만들기’
- ❖ 실천전략: 옹호와 견인/보정 그리고 (정책) 형성
 - ✓ 아당-재계-보수언론의 공세로부터 문재인 정부 노동개혁기조 옹호
 - ✓ 정부주도의 관료적 성과주의 정책집행에 대한 견제/비판과 내용적 보정
 - ✓ 노동정책의 구체화 & 실행에 대한 실질적 참여와 개입-반영
- ❖ 당면과제:
 - ✓ 일자리 노사정 대표자회의 구성 & 주도적 역할
 - ✓ 공공부문 비정규직-지역별 노정 또는 노사정 정책협의 활성화
 - ✓ 문재인 정부 노동공약에 대한 노조 차원의 실행 로드맵 & 대응전략 마련
- ❖ 고려사항:
 - ✓ 일자리 나누기와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와의 노동정치 교환은? (조합원 실리 vs. 사회적 명분=노조권능)
 - ✓ 참여정부 초기의 높은 노동계 기대와 분교 붓물 그리고 엇박자 노정관계 파탄 (좌측 압박이와 우회전의 노동정책) 유념 ⇨ 노동정치 국면전개의 객관적 판세 분석과 임기5년 중기적 운동전망 그리고 전략적 타이밍/인내 중요!!
 - ✓ 사회공공성의 노조운동 정체성 재확립과 국민적 신임 회복 ⇨ 조직을 배중!!

10

감사합니다.

11

토론문 1.

노중기(한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 좋은 주제이며 계속 토론해가야 할 주제임.

- 특히 10년 만에 자유주의 보수정부가 집권하였고 이전 민주정부 시기의 경험을 반성 성찰하는 이론적 실천적 관심이 필요
- 노동정책과 노동운동 대응전략 두 가지는 맞물려있으면서도 독자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 본격적 논의 전에 용어문제 제안
 - ① ‘근로’(勤勞)를 가능한 한 배제하고 노동으로 통일할 필요.
- 지난 30년 동안 노동대체. 근로 근로자 근로시간 근로환경 연장근로 근로감독 근로 조건 공공근로 등. 심지어 근로조합 근로운동 근로기본권 (고용)근로부도 나올 판.
- 근기법, 근로감독관 등 최소 사용 원칙, 중장기 운동적 실천이 필요함.(※정의당)
- ② 기타 : 분규(紛糾)는 쓰지 말고 쟁의로 통일.

2. 문재인 정부 정책의 기초

- ‘일자리 창출’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 개념으로 적절한가? 혹 그것은 여전히 성장주의 경제 전략의 하위 정책수단이 아닐까? 일자리위원회로 대표되는 정부기구는 총 자본의 이해(새로운 방식의 ‘시장주의’ 축적전략)를 실현하는 국가 지배전략의 수단적 기구가 아닐까?(※구성과 운영 방식을 보자...)
- 4차 산업혁명, 저성장-뉴노멀 시대는 적절한 문제 진단일까?
- ‘사회적 합의-대타협’이라는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 및 노동운동 대응전략이 없음.
- 1. 일자리(중소기업벤처부), 2.비정규직, 3.노동존중사회로 표현되는 정책사안들은 그동안 노동계 요구를 대폭 수용. 바람직하나... 이것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인가? 과연 그럴 의지-준비는 있는가? 저항 대책은 있나? 발표자 분석으로부터 더 논의 필요.
 - ① 일자리/노동의 구조/복합성격 : 경제전략, 노동시장, 노사관계, 정치, 노동운동 등
 - ② 자본의 강한 저항과 (계급역학) : 재벌개혁은 실현될 수 있나? 그 내용은?
 - ③ 여소야대 정치지형과 제도 : 수구-자유주의 보수의 저항 필연

④ 노동(전문성?)운동 관계 : 사회적 합의기구,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3. 노동운동의 대응전략

- 문재인표 어음 현금화전략: 견제와 비판, 옹호와 견인/보정, 실질적 참여와 개입 등의 구체적 모습은? ‘옹호’나 ‘보정-비판’은 가능하겠으나 ‘견인’ 여지는? 또 ‘옹호’가 타당한가? ‘어음-현금화’는 표현 바꿀 필요.
- ‘합의주의’ : 일자리 노사정대표자회의, 지역 노정정책협의 또는 노사정위원회?
- 참여정부 경험평가 : ‘높은 기대=분규붓물’, ‘전략적 인내 부족’ 등 인식이 맞는가?
- 인내, 전략 타이밍, 정체성 재확립 등. 노동운동 주체 혁신전략 및 실천의 필요성은? 노동조합 조직혁신, 산별-정치세력화 등과 문재인 정부 노동개혁의 관계는?
- 평자는 전략 목표로 ‘비정규노동 중심의 사회연대체제’(2017년 노동체제)를 제안.

토론문2. 전환기의 노동운동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1. 이병훈 교수님의 발제문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의 대응전략 방향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현재 70~80%의 높은 국민적 지지율, 일자리 중심의 정부조직(일자리위원회, 일자리수석 신설 등)과 추경 예산 편성, 인천공항공사 방문 등 현장 중심 접근
- '기울어진 운동장'을 교정하려는 시도에 대한 기대감 높음
- 낮은 조직 대표성, 기득권 지키기의 운동관행, 전략적 집행능력 미흡, 반노조 정서 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정확한 지적들
- 노동정책 어음을 현금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지속가능한 노동존중사회 만들기
- 이를 위한 엄호와 견인, 보정, 그리고 형성 전략

2. 보완적 논의

1) 양극화 극복을 위한 노동계의 위상, 그 구체적 해법은?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 소득 증대,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노동시간 단축 정책으로 의지 표명
- 이들 정책만으로는 양극화 극복은 요원, 노사관계의 프레임 자체를 바꾸어야
- 양극화의 이중적 의미 : 자본 대 노동, 고임금 부문 대 저임금 부문
- 자본 대 노동은 전반적 노동운동의 조직력과 영향력 증대를 통해서, 이를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 구사하고 관련 정부 정책을 견인, 전반적인 노조 조직률 제고
- 고임금 대 저임금 문제는? 연대 임금전략을 구체화할 필요,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공공부문 등의 의미 있는 시도들 ⇨ 계속 다듬어 나가야
- 노동운동이 고임금 대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보여주어야, 자본 대 노동의 양극화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어, 그것은 노동운동이 시민 사회에서 지지를 획득하는 과정이기도 함(대기업 노조 이기주의 낙인, 고립화 전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 산별노조운동의 복원? 기존 산별운동은 (조직과 교섭) 구조를 만드는데 주력, 그러나 한계에 봉착, 이제는 산별운동의 콘텐츠 개발에 주력해야, 그 핵심은 연대임금 전략
- 연대임금은 임금인상률 조정과 연대기금 마련을 통한 격차 축소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서, 임금체계 개편의 해답은 무엇인가? 기존 연공급 고수가 답인가? 연공급은 기업별 노사시스템, 고도성장기와 인구증가기에 적합(남성 중심 외벌이모델, 장시간노동 모델과 정합성), 지금은 저성장 시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국면, 기업 횡단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합리화하면서 생활과 관련한 복지 정책을 요구해야, 산별 정합적 임금체계는?

2) 생산 영역에서의 노조의 역할은?

- 분배에 대한 과도한 집중, 근본 문제는 생산 영역에서 노동의 위상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재조명, 정규직은 쉬운 일, 비정규직은 힘든 일? 위험의 외주화 등, 생산영역에서부터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공정한 직무배분과 공정한 임금, 숙련에 대한 정당한 평가 등 필요, 생산에 대한 기여를 토대로 당당한 요구를 (기계보다 사람을! 노동배제적 자동화에 대한 대안은?)
- ※ 제조업 노동자 1만명 당 로봇대수 : 한국 531대, 일본 305대, 독일 301대, 미국 176대(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2016)
- 노동과정에 대한 재평가, 노동의 소외 극복 전략은? 생산방식(서비스업 포함)에 대한 형성 전략으로 나아가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노동과정론의 업그레이드
- 작업장 수준에서의 참가로부터 이사회 참가까지, 경영참가에 대한 재조명
- 일터혁신 정책의 부활? 노동운동의 참가?

3)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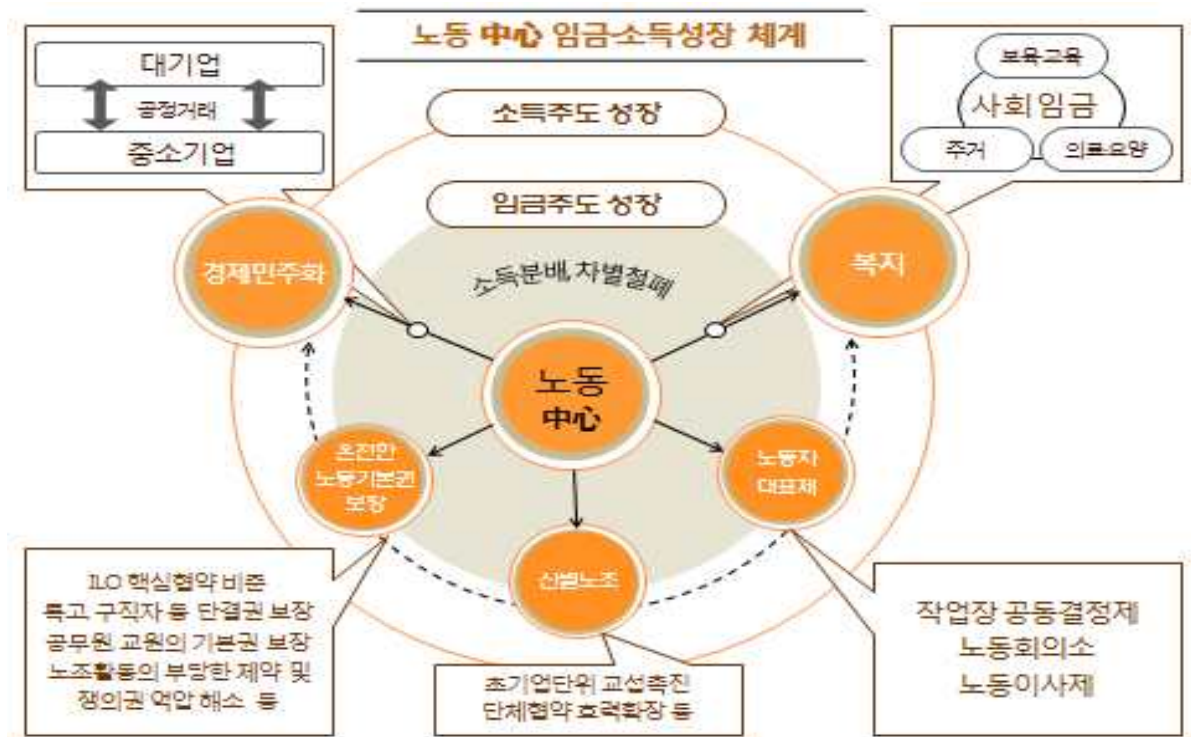
- 사회적 대화에 대한 유연한 접근(전국 수준이 아닌, 업종과 지역 수준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오면서 거시적 타협으로) 필요
- 노조에 대한 잠재수요는 높음, 조직화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필요(on-line, 조사연구와 활동의 결합, 상담과 조직화 등 다양한 채널)
- 총파업 전술에 대한 재검토(촛불의 경험, 파업보다 집회?)

토론문 3.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정책과제

유정엽(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

1.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 노동중심 임금소득주도 성장으로의 전환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추진
- 노동기본권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반한 좋은 일자리 창출
- 소득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기능과 역할 확대



2. 주요 노동정책 과제

1) 추진 방향

- 노동관련 국정과제 : 우선 선행과제 + 근본 해결과제

- 선행과제 : 부당한 행정지침 및 행정해석 폐기(변경), 단협 시정명령, 각종 위법부당한 시행령·시행규칙·예규 개정, 최저임금 인상, 국제노동기준 협약 비준 등 정부방침으로 해결 가능 → 새 정부의 정책의지 표명, 무너진 신뢰 회복
- 근본과제 : 노동기본권 및 사회안전망 확대, 좋은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입법·제도개선 과제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다층적 대화채널(일자리위, 새로 개편된 노사정위, 노정교섭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야함.

2) 선행과제 : ‘위법·부당한 행정지침·해석 폐기’

- 노동부 2대 지침, 쉬운 해고, 취업규칙 일방변경 등을 비롯한 부당한 행정지침의 전면 점검 및 폐기(고용 및 노동시장 - 노사관계질서 개입 훼손한 문제)

<p>☞ 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 ① 공정인사지침(2016. 1. 19), ②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2016. 1. 19), ③ 단체협약 시정지도 지침, ④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지침(2016. 1. 28)의 즉각적인 폐기</p> <p>☞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근기 68207-2855, 2000. 9.)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2010.7./2013.7.),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2011. 7.),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1. 7.), △상시·포괄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2012.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지침(2013. 4.), △통상임금 산정지침(2012. 9.),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2014. 1.), △고용형태공시제(기업매뉴얼)(2014. 2.), △새로운 미래를 여는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2014. 3.) 등 점검 및 폐지</p>

-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노동위원회 심의요청 취하 → 부당한 교섭개입 중단
- ※ 새 정부 출범초기, 행정해석·지침폐기, 단협시정명령, 공무원노조, 전교조 합법화, 특고 노조의 인정 등 더불어 정부 행정조치로 해결 가능한 정책과제들은 조기 실행 (노동시간, 최저임금 현실화, ILO협약 비준추진 등 영역)

3) 제도개선 과제

□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과 노조조직률-단협 적용률 제고

- 부당한 노동기본권 침해해소 및 타임오프(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교섭창구단일화 강제 등 노사의 자율교섭권을 침해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전면 개정
: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초기업단위의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제도개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개선, 공무원.교사의 노동기본권 제한해소, 노조 설립신고제 개선,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축소 등
- ILO 핵심협약(제87호, 제98호, 제29호, 제105호, 제151호, 제189호, 제135호) 선 기준을 통해서 노조법 개정 견인 : 고용노동부는 ILO 기준 추진 시 노동관계법 및 기타 국내법 정비 후에 비준하겠다는 핑계로 수십년간 ILO핵심협약 등의 기준을 미뤄옴(선 기준을 통해서 ILO협약 준수 의지를 표명하고 국내법을 정비하는 조치 필요)
- 교섭창구단일화 강제제도는 자율교섭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전면 개정되어야 함. 우선 산업별노조 교섭의 경우 창구단일화의 예외로 인정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

□ 노동자 이익대표 체계 정비 및 작업장 민주주의 실현

- 근로자대표 선출제(정기화, 의무화)개선, 근로자대표위원회(비정규직.사내하청 등 다양한 사업장내 계층참여), 노사공동위원회 도입(취업규칙 변경시 합의구조, 노사공동결정 구조)
- 노동자경영참가법 제정 : 인사경영사항 공동결정, 노동자이사제 도입 등
- 미조직 취약계층노동자의 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법률.고용복지서비스 제공, 정책적 지원을 위한 노동회의소 제도도입(더민주 대선공약: 노동회의소 도입 및 농어업회의소 도입)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노동계 참여 보장, 노동법원 도입 : 노동사건의 신속 분쟁해결, 전문성 제고, 소송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2020년까지 설립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철폐

- 국민생명안전업무의 기간제고용 및 외주화 금지 및 상시지속적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확립(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 사용자 책임회피 목적의 무분별하게 만연된 사내하청, 아웃소싱에 대해선 원청사용자의 강력한 공동책임 의무부여
- 정규직 전환문제 관련노조와의 긴밀한 협의, 비정규직 사용부담금제도 도입 필요
- 1년 미만 고용 퇴직급여 보장, 노동조합의 차별시정청구권 보장 등 제도 개선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조치관련 정규직/비정규직간 업무특성, 실태조사 등에 의한 고려한 섬세한 접근 필요, 정규직 전환방식은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 직군 전환 △직접 자회사 공단 설립 등이 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정규직 전환방식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접근할 것인가 등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 실노동시간단축 : 잘못된 행정해석 폐기부터

- 특례업종 축소 및 보호 : 연속휴식 11시간 보장, 1주 60시간 이내 상한선 도입(연야 이견이 없는 사항 우선 입법추진)
- 법정노동시간의 적용 사각지대 해소 :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적용제외자, 관리감독자 등, 포괄임금제 금지
- 장시간노동-짧은 노동생활에서 적정노동시간-긴 노동생활로의 전환,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김유선)에 전적 공감
- 대체휴일 확대 : 13일 전체 (관공서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및 근로기준법 개정)
- 52시간을 훨씬 넘어서는 상시적 장시간노동이 일상화된 우리나라의 경우 52시간 상한제 실시만으로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중소·영세 기업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저하 없는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고용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함(교대제 개선-설비개선 등 노동시간단축-고용늘어나지 않으면 지원받기 어려운 구조 / 시간단축으로 임금감소 시 지원제도-사업주 지원에서 노동자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
- 연차휴가의 모두 사용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보완대책이 필요함.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 실태와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직장인은 연차휴가의 약 60%만이 사용하고 있는 셈임(2016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1600여개 기업 중 연차휴가를 아예 주지 않는 기업도 5.9%).
- 예를 들어, 한국노총 산하 우편집배·택배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의 경우도 우정본부는 10일의 연차휴가만 보상해주고 휴가를 소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중한 업무와 인력부족으로 휴가소진을 60~70%에 불과함.
- 우리나라 기업의 다수가 최소인력으로 장시간노동을 시키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인력

총원 없이 상태에서 당장 연차휴가 소진 의무화해도 휴가내고 출근하는 사례 빈번, 이에 노동자의 연속휴가사용청구권,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의 엄격한 제한 등의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고용안정 및 보호

- 정리해고 요건 강화, 해고 회피절차 및 재고용 의무화(근로기준법 개정)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 ▶상한액 현실화 최저임금 일액 1.2배(시행령), ▶기여요건 완화, 지급기간 확대 등(고용보험법 개정)
- 정부발 구조조정 중단 (공기업 : 민영화(주택관리공단 등), 기능조정, 민간발주물량의 복사발주 및 외주화 금지)
- 대규모 구조조정 : 중앙단위 노사정 컨트롤타워 조직설치, 업종·지역단위 대응기구 운영과 노조참여 보장, 근로자대표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기업 변동 시 고용승계 의무화
- 4차 산업혁명 대응 : 범정부차원의 노동4.0위원회 구성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실현 등 적정임금보장

- 사람에게 일을 시키려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대원칙 준수
- 6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시 2020년까지 1만원 실현되도록 매년 15.6%이상 인상이 필요한 상황(2017년 최저임금위원회 결과는 새 정부의 정책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
-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공공기관 노임단가 준수)
- 생활임금의 법적근거 마련,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반영, 위반시 제재 강화,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체당급 지급(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 안전한 노동 및 폭넓은 사회안전망

- 통근재해 인정, 감정노동자보호, 특고노동자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중대 산업재해 처벌강화법 도입 등

□ 사회적 대화 전면 재편 및 기능 확대

- 일자리위원회의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 반대 :
 - 일자리창출 관련 정책과제 및 대책마련에 집중된 논의

- 노동시간, 최저임금 등 제도개선 노동현안은 사회적 대화기구의 전면 개편과 함께 노사정 대화를 통하여 추진
- 사회적 대화기구의 전면 개편 및 재가동 이전이라도 다양한 대화채널 가동(일자리위원회, 새로 개편된 노사정위, 공공·금융·보건·제조 산업별 업종별 대화채널, 노정교섭 등)
- 의제 및 참여주체 확대 :
 - △의제확대 : 경제민주화+조세개혁+사회안전망+노동입법과제 등 사회통합을 위한 경제 사회 의제 전반
 - △참여주체 : 의제별로 비정규직, 청년, 여성 등 경제사회주체 확대

□ 노동존중 노동가치 구현

-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교육 의무화
- 노동박물관 건립, ‘근로자의 날, 근로기준법 등’을 ‘노동절, 노동기준법’ 등으로 명칭 변경 필요
- 취약계층 노동자 자녀 청소년 장학지원 확대

4) 추진방식 : 노동조합의 역할 증대

□ 노동계와의 소통을 위한 상시적 노정협의체 가동

-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지난 ‘5.1일 대선승리 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에서 정례적 노정 정책협의체 가동하기로 약속.
- 민주노총도 노정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 및 일자리위원회 참여 결정
- 심각한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과 낮은 노조조직률, 낮은 협약적용률, 고용위기 및 노동 시장 양극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노정교섭 채널가동을 정부의 노동계 편들기로 왜곡해서는 아니 됨.
- 정책협약 과제의 이행 점검과 노동현안 및 상호관심사를 주기적으로 논의하는 상시적, 정기적 노정협의체가 가동되어야 함.

□ 새 정부 정책의 변화에 조응하는 노조의 역할

- 산업별 교섭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확산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임.

- 특히 공공부문 및 금융부분에서 산업별 교섭 및 새 정부의 정책변화에 대응하는 노정 교섭이나 노사정 협의의 틀을 만들고,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음
- 한국노총 산하 금융산업노조는 2004년, 2005년 등의 교섭에서 차별개선을 위한 차등 인상률을 요구하고 합의한 바 있음. 2006년 비정규직법 시행을 전후로 한 공공 및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 전환, 조직화 활동이 전개된 바 있음.
- 공공부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산별 차원의 대화채널 가동, 고용형태 개선 및 장시간노동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의 모델 제시 가능
-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산업 및 업종차원에서 노조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촉진, 차별개선 등을 위한 노사합의, 노사교섭 모델 만들기, 조직 활동 강화 필요
- 장시간노동 사업장에서의 실노동시간 단축 및 휴가사용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등의 모범사례를 선행적으로 만들고 확산시킬 수 있음.

토론문4.

새 정부 노동정책과 노동조합이 나아갈 길

박은정(민주노총 정책국장)

1. 불평등·양극화 해소,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의제

- 민주노총은 촛불민중항쟁을 통해서 등장한 새로운 정부는 재벌체제를 청산하고 노동존중의 평등사회로 나아가야 함¹⁾을 밝히고, 노동분야의 개혁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방향으로는 △민주적인 노정, 노사관계 실현 △최저임금1만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조할권리, 노동3권 보장 △노동시간단축, 일자리 확충을 제출하고 이를 위해서 관련한 제도 개선과 행정분야의 개혁 의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에 제출하였음.
- 문재인 대통령은 종합적인 노동분야 정책 공약을 제시함. 이전 정부의 어떤 대통령보다도 포괄적이며 진전된 노동공약을 제출하였음. 특히 전체적인 공약 내 구성을 보더라도 ‘일자리 확대’를 제1공약으로, 정치권력·권력기관 개혁, 반부패·재벌개혁 등 개혁공약을 제2, 제3 공약으로 제시함으로써 정경유착과 재벌중심체제의 극복과 경제불평등·사회양극화 해소의 의제를 드러냄. 또한 대상별 공약에서도 청년, 여성, 장년과 고령자, 등 계층별로 강조되어야 할 노동조건의 최소기준을 다양한 방식으로 강조함.

1) 최저임금1만원 실현

	민주노총 요구	문재인 대통령 공약
제도, 핵심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정부 로드맵 제시 - 최저임금 핵심 결정기준을 가구생계비로 하도록 개정 - 감독강화를 위한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및 명예근로감독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시급) 2020년까지 1만원 달성, 지자체 생활임금제 확산,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적용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등을 포함 -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및 상습□

1) 민주노총 정책보고서 2017-01. 민주노총은 대선의제로 △박근혜 적폐청산·재벌독식체제 해체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죽고 다치는 지옥일터 개선 △노동조합 조직률 30%·단체협약적용률 50% 실현, 노동3권 보장 △연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공공·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100만개 ‘좋은 일자리’ 창출 △7대 영역(보육·교육·고용·주거·노후·의료·빈곤) 평생복지와 사회공공성 강화 등 5대 의제와 분야별 10대 과제를 제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최저임금 위반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상승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 - 최저임금 위반신고 간소화, 최저임금 준수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서 사용자로 전환 	<p>악의적 최저임금 위반사업주에 대한 제재</p>
이행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 체불임금 노동부 선 지급, 후 대위권 행사 등 제도 보완 -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최저임금 준수 대책 제시 - 대기업 원·하청 불공정 거래와 납품 단가 후려치기 횡포 근절방안 마련 및 최저임금 인상 시 자동연동적용으로 입찰계약제도 개편 등 - 중소기업 불공정 관계 개선 - 재벌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를 통한 중소기업인 보호 등 - 납품업체/대리점/가맹점 등의 재벌 대기업과의 집단교섭 보장 (공정거래법 제19조 개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 조정요구권 인정 추진 -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대한 용역 및 건설 계약 근로자 임금 등을 직접 입금 하는 제도 정착, 향후 민간으로 확대 - 범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보호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제시 (카드수수료인하,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확대, 납품단가와 최저임금 인상 연동 등) -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세금감면 및 지원제도 확대 -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 있어 최저임금 보장제도 도입 - 지자체 생활임금제 확대 민간확산,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적용, 공공발주사업 하도급 임금보장제도(적정임금)제 시행 및 민간 확대

2) 비정규직 문제 해결

- 비정규직 문제를 접근하는 관점과 방식은 매우 중요함. 관점에 따라 해법이 달라지고 정부의 정책과제가 바뀌기 때문임. 대표적인 노동문제인 비정규직 과제는 이전 정부에서 경제의 하위범주이거나 고용 정책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해 왔음. 비정규직 대책이 없었던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과,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를 내건 박근혜 적폐정권의 일자리 '늘시오정책'이 대표적임. 상황이 이렇다보니 노동 문제와 연계된 공약과 정부 정책은 항상 경제논리에 종속되어,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의 후속 결과로 치부되었음. 심지어 경제가 어려워지면 노동 공약은 물거품이 되거나 흔적조차 찾기 어려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노동공약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는 경제의 종속물이 아니라,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가치 지향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
-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할권리와 노동기본권을 함께 제출하고 있음.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기본 방향에서는 '일자리 질 개선'으로 접근하여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것을 정책의 기본축으로 설정하고 있음. 물론, 세부

의제로 ‘사용사유제한’ 원칙이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책을 병행해서 제출하고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사용 억제를 위해서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 등 적극적인 방안을 제출하여 이전 정부 정책과는 뚜렷한 변별력을 보이고는 있음. 그러나 비정규직 정책의 기본 축을 ‘일할 권리 보장’, ‘노동기본권 보장’의 두 가지 지향을 뚜렷이 하도록 하여 비정규 정책의 이행 과정과 성과가 ‘일자리’로만 귀결되지 않도록 정책 이행 과정마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

	민주노총 요구 의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
제도, 정책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근기법, 노조법) - 원청 사용자 책임 -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원칙,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등 차별 금지 - 협력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와 단체협약 승계, 파업 시 원청 대체근로 금지 - 기간제법·파견법 폐기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민간위탁 금지 법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 비정규직 규모 축소 및 임금차별 금지, 차별없는 공정한 노동시장, 노동권 회복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 간접고용 원청기업이 공동 고용책임 -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이행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적극적 행정해석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노조(설립증 교부된 노조) 실질적 인정에 근거한 행정조치 시행 : 적극적 단체교섭 지도, 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신청 진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엄정 처벌 등 - 대법원 판례와 ILO 권고 등에 따라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사업주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 원청사업주 부당노동행위 입건 수사와 처벌 강화 - 공동 사용자 기준 정립. 불법파견 판정 시, 특별근로감독 실시 - 파견/도급 구분 기준에 관한 행정지침을 엄격화 함.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로드맵 제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적용범위 확대 및 실효성 강화 - 정부,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 강화: 노정교섭 정례화, 공공부문 노동정책 부서설치 - 무기계약직(상용직, 별도 하위직급 등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 규모 OECD 수준 감축 로드맵 마련 제시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을 월 최대 100만원(연 1200만원)까지 확대(현행 월 60만원) - 일정 규모 이상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대기업에게 ‘비정규직고용 상한비율 제시’ 하게 하고, 이를 초과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을 부과. 이를 재원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지원금 및 사회보험료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사회안정망을 확충 - 고용형태공시제(민간대기업 대상)에 비정규직 사용목적과 주요업무 공시 의무화

	에 대한 차별해소 조치 -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근속인정(+퇴직금 인정) -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저임금 비정규 일자리,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정책' 중단	
--	--	--

3) 노동적폐 청산, 노조할권리, 노동3권 보장

- 노조할권리와 노동3권 보장 문제는 현행제도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행사를 매우 구체적으로 억압하고 있는데다가 △전교조, 공무원노조 불법화 △산별 사용자 단체의 해산, △컨설팅을 통한 노조파괴 만연 △공안 검찰을 통한 정권 차원의 노동조합 탄압 △국가나 민간 사용자에게 의한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남발 △노동조합활동과 단체행동에 대한 업무방해 또는 업무방해 가처분을 통한 간접강제금 징구 남발 △쉬운해고.정리해고 남발 △판례의 후퇴와 사회통념상 합리성 논리를 내세운 노사대등 결정원칙의 파괴 △단체협약 시정명령 남발 등 정부에 의한 노사관계 개입 등 제도와 행정 전반에서 총체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과제임.

<노조법상 쟁의행위 금지행위 및 자유형 이상 벌칙 조항>2)

벌칙	금지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방위사업체 종사자의 쟁의행위 금지 * 공무원과 교원의 쟁의행위 금지(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않는 쟁의행위 금지 ○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업무방해 금지 및 피케팅에서의 폭행·협박금지 ○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주요업무시설의 점거 금지 ○ 안전보호시설 방해 행위 금지 ○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운영 방해(2008. 1. 1.부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 요구 금지 ○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금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의 정상 수행 위반 ○ 조합원 찬반투표에 의한 재적 과반수의 찬성 위반 ○ 행정관청의 안전보호시설에서의 쟁의행위 중지명령 위반 ○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금지 ○ 중재회부 시 15일간 쟁의행위 금지

2) 2016. 11. 15. 국제노동기구 가입25주년 기념 토론회 김선수 변호사 발제자료

<노동조합 활동 관련 벌칙.과태료 조항>³⁾

벌칙 또는 과태료	금지행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요구 쟁의행위 금지 ○ 단체협약 위반 ○ 노동위원회의 조정서 또는 중재재정서 위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 설립 신고 없이 노동조합 명칭 사용 ○ 행정관청의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명령 위반 ○ 행정관청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위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의 서류 비치 또는 보존 위반 ○ 노동조합의 행정관청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사항 변경사항 신고 위반 ○ 노동조합 해산 후 행정관청에 신고 위반 ○ 단체협약 체결 후 행정관청에 신고 위반

- 이런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 역시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공약을 다수 제출하고 ‘노동 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ILO 기본협약 비준’,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 등 노동분야 정책에서 노동기본권을 강조하고 있음. 다만 노동조합 활동의 토대가 되는 쟁의권의 보장에서는 ‘현행 제도가 보장하는 범위 내의 쟁의’로 인한 손해가압류와 업무방해 적용 금지만을 제출하여 다른 의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정책을 제시함.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는 노동3권 보장에 관한 공약이 누락되거나 대선기간 후보의 공식적인 발언으로 공약 확인이 안 되는 등 공약의 표명 과정도 ‘일자리’정책과 명백한 차이를 드러냄.

	민주노총 요구 의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
제도, 정책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노동자에 노동3권 보장 -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 간접고용 원청사업주 사용자책임 인정 / 공무원·교사·교수 노동기본권 보장 / 사실상의 ‘노조설립허가제도’ 개선 / 타임오프 제도 폐기·노사자율 보장 / 부당노동행위 근절, 노동활동 탄압 금지 /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 파업권 보장 - 정리해고, 정부 정책 등에 관한 쟁의권 보장 / 노동조합 및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적용 금지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금지 / 필수유지업무 조항 폐기·최소유지업무 신설 / 쟁의행위 시 원청 대체인력 사용 금지 / 직장폐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 노동자, 공무원, 교원, 단결권 보장 - 노조설립절차 개선 -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근절 -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 쟁의행위 관련 업무방해 적용 금지 -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 산별교섭 등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촉진. 산별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 산업별 노사정 대화 적극 지원

3) 3) 2016. 11. 15. 국제노동기구 가입25주년 기념 토론회 김선수 변호사 발제자료

	<p>제한 / 군 대체인력 사용 관련 재난 및 안전기본법 개정 / 집회시위활동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청구 제한</p> <p>□ 산별교섭 활성화 등 노사 자율교섭권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제도 폐기·자율교섭 보장 / 산별교섭 등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의무화 / 공공부문 노정교섭 보장, 산별교섭 의무화 / 산별협약 등 초기업단위 단체협약 효력 확장 / 조례나 지침에 의한 단체협약 개약 금지 / 노동위원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 노사정위원회 폐지 	
<p>이행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LO 결사의자유 핵심협약 제 87호·98호 비준 절차 개시 - 노동개약 4대 행정지침 폐기 -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철회 - 노조법 시행령 제9조 ②항 폐기 - 노조활동 관련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철회 -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 <p>□ 부당노동행위 근절 위한 적극적 개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노동행위 관련 구속원칙과 구형 형량 강화(법무부) - 압수수색 등 수사원칙 확립 - 부당노동행위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각종 행정·재정적 제재조치 - 노조활동권리·노동3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 부당노동행위 대응 관련 전면 개혁(검찰 공안부 수사권 이관, 노동부의 실질적인 수사 주도, 노동부 내 특별근로감독기관 신설, 주요한 부당노동행위 사건 직관 압수수색 구속·강제수사 원칙 등) <p>□ 행정개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와 운영관련 시행령 등 개정 - 정의행위 관련 방산물자 생산업무 범위 등 - 직장폐쇄 관련한 규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 수사 - 조정절차 중 노동위원회 행정지도 관련 규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조합 활성화 - 노동조합 조직률과 협약적용률 획기적으로 높일 것 - ILO기본협약비준으로 노동관계법 개정 건인. - 개헌 방향에 기본권 강화 - 공공부문 (민간 단계별)노동자추천 이사제 도입 - 근로감독관 증원, 실질 수사권 강화 - 노동부, 공정거래위,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노동관계법 합동수사 TF운영 - 노동탄압 피해 노동자의 회복조치 - 사업장 내 ‘종업원대표’ 제도 실질화⁴⁾ 등 <p>※ 비 노동공약 중 적용 가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대폭 확대 - 재정신청 대상을 현행 고소사건 뿐 아니라 고발사건(현행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죄, 폭행가혹행위 적용) 까지 확대 적용. 공소유지보호사제도 부활

4) 노동시간단축 . 청년실업 해소

4) 문재인 후보의 ‘종업원대표’제도 실질화는 6개 노동관계법에 24가지 역할을 규정한 ‘근로자대표’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임.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가 항상 노동조합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노사대등의 결정원칙을 강화하려 한다는 점과 근로자대표와 노동조합이 병기된 노동관계법의 대표성 강화의 의미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약 평가에 반영함.

	민주노총 요구 의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
핵심 정책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좋은 일자리 만들기 - 공공투자, 공공서비스 획기적 확대와 생명안전 일자리 확충으로 좋은일자리 만들기 - 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 개정 - 연 1800 노동시간 상한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설치 - 주요 정책과 예산 사업에 ‘고용영향평가제’ 실시 -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81만개 창출 - 임기 내 연간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위한 「칼퇴근법」” 도입 - 연장근로를 포함한 법정 노동시간인 1주 상한 주52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병행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하지 않는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2855, 2000. 9. 19) 폐기 - 불법 노동 근절(연장노동 한도 준수)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청년 신규채용 기업에 인센티브 강화 - 공공·안전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 -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 주휴일, 재량근로 대상업무, 노동시간 적용 제외 관련(노동부 승인 및 시행령에 따른 업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인정 사업 범위 등 전면 개정 - 포괄임금제 제한하는 행정지침 마련과 철저한 근로감독 시행 - 노동시간 등 적용 제외 승인 업무 관련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 중 매년 80시간 이상 단축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종합 점검 추진단” 구성 : 기업별 노동시간공시제도 도입하고, 국가차원의 노동시간단축 계획 수립 의무 부여 - 연장근로(휴일을 포함)를 포함한 법정근로시간 주52시간 상한제 전면이행(중소영세기업 및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연장근로 제한법제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법 제59조) 및 적용제외 산업(제63조) 축소와 1주 60시간 상한제 도입 - 장시간 노동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위반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 - 대체 공휴일제 확대 - 대통령의 임시공휴일 선포 적극 추진 등

2. 노동존중사회 이행을 위한 과제

1) 민주적 노정·노사관계 실현

	민주노총 요구 의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 ⁵⁾
이행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정교섭(정책협의) 정례화 - 산업업종별 노정협의를 마련과 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정, 사-정 간 제한 없는 대화와 소통 - 노사 양측의 대표성 확대

	<p>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적·재정적 수단을 통한 재벌대기업 산별교섭 참여 유도 - ‘모범사용자’로서 공공부문 산별교섭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별 노사정 대화방식 구성 - 상시적 소통 강화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별교섭 제도화 - 노사정위원회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정위원회 개편을 통한 사회적 대화를 재구성(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 민주적 노정·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노정, 노사(산별교섭), 노사정 등 가능한 모든 차원에서 다층적·중층적 교섭(협의)틀 마련이 필요함. 노사정 간의 신뢰가 허약한 상황에서 중앙 차원의 상설적 사회적대화기구 재편은 실효적이지 않음. 오히려 산업업종별 협의구조 마련, 산별교섭 등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활성화, 노정간 직접 교섭(협의) 정례화 등 다층적·중층적 교섭(협의) 구조가 파탄에 이른 노정·노사관계를 복원하는 실천적 경로임.
- 민주노총은 민주적 노정·노사관계의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중층적인 노정교섭(정책협의를)를 적극화 하고, 헌법과 법률의 취지와 어긋난 노동행정의 적극적인 개선과 산별교섭 확대 실현의 계기로 만들고자 함.

2) 국제노동기구,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적극 이행 촉구

- 노동존중 사회 이행을 위해서는 노동관계법의 전체적인 개선이 요구되나, 최소한 국제노동기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사항만이라도 우선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구분	ILO 권고, UN 권고	국가인권위 권고
노사대등 결정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se no. 2829.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결론문에서 제시한 원칙(노사관계 자율성과 공공서비스의 특수성의 조화)을 준수할 것 - case no. 2829. 공공기관 관련 조치(재정상황 건전성 평가 등) 도입 이전에 노조와 협의 - case 3138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380차 보고서. 단협시정지도 관련 - case no 2829.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협을 해지한 경우 정부가 선의의 협상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p>2014. 9. 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천·확산을 위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 권고 <p>- 2016. 8. 25.</p> <p>고용노동부 공정인사지침 및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에 대한 의견표명</p>
노조탄압 금지, 해고제한	<p>□ 구속노동자 석방, 복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2017년 4월 25일 채택 	<p>2013. 1. 17.</p> <p>정리해고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p>

5)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10대 공약, 공약서와 민주당 대선 정책자료집, 민주노총 정책질의에 대한 회신을 포함함.

구분	ILO 권고, UN 권고	국가인권위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속자 최소화 및 업무방해죄형법 적용 배제 - 경제적 정치파업 허용 □ 공공부문 노조탄압 금지 해고자 복직 - 335차 보고서 (2004년 11월) - 2017. 6. 330차 이사회 채택 no.18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 5. 26.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6. 12. 27. -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단결권, 교섭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긴급개입> (2009년 5월) - 2012년 3월 ILO 이사회 채택 결사의자유 위원회 권고 사건번호 2602 □ 사내하청, 간접고용 노동기본권 - <단체교섭 거부> (2008년 6월 권고, 2009년 11월 재차 권고) - <하도급 남용 예방> (2008년 6월 권고, 2009년 11월 재차 권고) - 2017년 3월 ILO 이사회 채택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 - 공무원, 교원 단결권, 노동3권 관련 060329 권고, 070601 권고, 2014년 3월 권고 - 358차 보고서(2010. 11.) -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중간보고서(2011. 11.) - 2016년 3월 결사의자유위원회 최종보고서 - 2017. 6. 330차 이사회 채택 no.18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4.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 - 사내하도급근로자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2009. 9. 3.) -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2010.9.30.)
타임오프 폐기 노사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3월, 제271차 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 - 결사의자유위원회, 제327차 보고서, 2002년, 487항 - 2004년 11월, 제291차 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 - 결사의자유위원회, 353차 보고서, 2007년 - 2017. 6. 330차 이사회 채택 no.1865 	
쟁의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활동 및 정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적용 금지 - 327차 보고서 (2002년 3월) - 331차 보고서 (2003년 6월) - 335차 보고서 (2004년 11월) - 340차 보고서 (2006년 3월) - 2008년 6월 권고, 2009년 11월 재차 권고 - 359차 보고서 (2011년 3월) - 2017. 6. 330차 이사회 채택 no.1865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금지 - 359차 보고서 (2011년 3월) □ 필수유지업무 조항 폐기·최소유지업무 신설 - 1629호 제소 건(직권중재 관련) - 결사의 자유 위원회 사건 번호 1865, 등 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 11. 22. 공격적 직장폐쇄 관련 정책 권고 및 의견표명 2012. 11. 22 노사관계 경비업체 투입 관련 정책 권고 및 의견 표명

3) 산별노조운동 적극화

1996년 5월 9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노사관계로드맵 1998년 2월 정리해고 도입, 근로자 파견제 도입	1996 ~ 1998
	1999 연맹-자본간의 협약(고용협약, 임금협약, 작업장 협약)
	2001 민주노총 산별노조 전략위
8월 경제위기론, 노동조합 이기주의, 대기업 귀족노조 등 이념적 공세, 손배가압류 등	2003 5년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집단교섭, 통일교섭 추진
	2004 산별 최저임금 쟁취사업 제출 -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산별협약 쟁취 - 금속노조 금속산업 최저임금 합의, 손배가압류금지, 비정규직 적용 산별 단협
	2005 - 산별노조 전환 방침 의결 - 복수노조 시대 대비, 산별노조건설 및 발전특위 결의 - 비정규직 조직 확대(건설, 제조, 서비스 등)
- 2006년 11월 30 기간제법 제정 - 2008년~2008 노사관계 로드맵	2006 2006 민주노총 산별전환 조합원 총투표
	2007 2007 대산별노조 개편 추진 비정규관련 산별임단투 포함 임단협안을 산별교섭 중심에 배치
	2008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분리직군 정규직 직급 편입 노사관계선진화법 대응 산별교섭 법제화 등 정책대안 마련
2010년 노조법 날치기 통과 타임오프	2010 금속, 건설, 증권 등 산별교섭 의제 확대 대기업 산별교섭 한계, 보건 사용자단체 해산
2011 복수노조창구단일화 시행	2011 산별운동 정비 강화 - 현장조직력, 조직내 소통, 간부양성체계마련, 대의체계 혁신, 지역운동강화 등
	2012 제2산별운동 위한 연구 및 논의 ~ 2016

○ 발전기 산별교섭을 위한 민주노총 사업 특징

- 민주노총은 2003년 대의원대회에서 5년간 중장기 발전계획을 채택. 산업별 집단교섭

과 통일교섭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 당시 27개 노조 26만 5천여 명이 조직되어 있던 산별 상황에서 상하반기에 걸쳐 산별교섭 현황을 파악하고 공유하는 등 선별교섭 진행 상황을 총괄.

- 산별교섭과 산별협약, 산별전환이 성과를 나타냈던 2000년 중반은 △주5일제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 △산별 최저임금 쟁취 등 핵심적인 노동의제가 산별교섭의제로 제출되었음. 노동조건을 핵심내용을 산별협약으로 협약화하면서 민주노총은 2005. 9. 중앙위원회에서 산별전환 조합원 총투표를 의결하기도 함.

○ 비정규직조직 조직 확대

- 기업별노조의 벽을 넘어 산업 내 노동자를 포괄하는 산별노조의 기본성격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노동자의 조직확대는 산별노조의 외연 확대만이 아니라 산별노조로서의 의제 확대, 조합원의 산별의식의 강화 등 질적 단결 강화를 위한 필수적 과제
- 보건의료노조 산별협약(2007년)에서 임금협정의 일정비율을 비정규직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확보한 것과 금속노조 산별교섭의제의 핵심 내용으로 산별최저임금을 정착한 것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산별노조의 필요성을 드러냄.
- 비정규직 조직화는 교섭구조와 교섭방식의 새로운 사례를 등장시키기도 함. 예를 들어 90%가 비정규직조합원인 건설노조는 조직과 교섭방식에서 기업별노조에서 출발한 산별노조와 다른 특징을 보여줌. 교섭방식에서 타워크레인, 전기원 등 산하에 직종별 전국, 또는 지역교섭과 약 150개 업체와 전국단위로 중앙교섭을 진행. 플랜트노조의 경우에도 포항, 여수, 전남동부, 울산 등 지역단위 전문건설업체와 지역단위 20~80개 업체와 집단교섭을 진행. 이들 노조는 지역교섭 외에 별도로 사업장 차원의 교섭이 없다는 점에서도 기존 산별질서와 다른 특징을 나타냄.

○ 산별교섭구조 마련을 위한 민주노총의 대정부 협의

- 산별교섭이 일정한 진전을 이루던 시기, 민주노총은 산별교섭구조 마련을 위한 대정부 교섭을 집행. 노동부 및 산업부 간담회 등 대정부 정부 교섭을 통해 산별교섭구조 형성과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사업을 병행.
- 산별교섭의 주체는 산별노조이나 집단노사관계 산별교섭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정부의 중립자적 태도와 산별교섭 보장을 위한 제도 환경 마련을 위한 총연맹의 역할 병행 필요.